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의 수수료



경희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최현림

현재 의료계의 26개 전문 진료과목 중 1996년 가장 마지막에 법제화된 직업환경의학과 만큼 의료법 외에 산업보건 관련 각종 법의 규제를 받는 과목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법의 규정들을 알기도 힘든데 이 규정들이 수시로 바뀌곤 하여 곤욕을 치를 때가 있다. 바뀐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축소하거나 인력이나 시설이나 기자재를 늘이거나 줄여야 할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진료부서로서 작업환경의학과와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보건관리대행이다. 도심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는, 많은 산업체들이 외곽으로 이주하여 나갔기 때문에 과를 운영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환경의학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건강검진사업이 고유 업무보다 큰 경우도 있다. 물론 건강검진사업도 그 대상이 되는 직장보험 가입자는 물론 지역보험 가입자도 모두 근로자와 근로자에 의한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직업환경의학과와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수가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쉬운 경우가 많다. 커피는 길거리의 자판기에서는 200~300원이면 사먹을 수 있지만, 브랜드 커피점에서라면 적어도 2,000~5,000원 정도를 주어야 사먹을 수 있고 고급호텔에서는 6,000~9,000원을 주어야

사택을 수가 있다. 그러나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등은 일률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인상이 가능하고 운전수나 회사 마음대로 받지 못한다.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이러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기관별로 업체별로 들쭉날쭉하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보건관리대행에는 수가 또는 수수료를 따르기 마련이다.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수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이러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기관별로 업체별로 들쭉날쭉하다.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의 수가나 수수료는 커피 값에 해당할까, 아니면 버스 요금에 해당할까?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에는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측정기관에 대하여 질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관리대행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이나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나 수가는 커피 값처럼 기관과 사업주가 알아서 정하도록 내버려둘 것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공사 수수하듯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자와 발주처가 계약을 맺도록 하여 부실 측정이나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안 될 것 같다. 적어도 원가분석을 통하여 합당한 가격을 정해주거나 협의회가 만든 가격을 정부 당국과 협의하여 승인해 주는 버스 요금이나 전철 요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년 전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에서 작업환경측정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기관에 제시하였다가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위배한 담합 행위라고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없어지면서 협의회는 와해되어 해체되고 말았다.

이러한 수수료 결정의 임의 방치는 자유경쟁을 유도하여 수수료의 인상을 막는 순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역작용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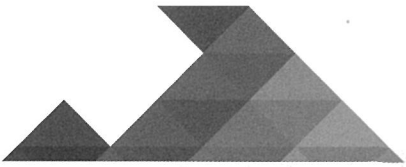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업주는 측정 수수료가 낮고 측정 결과를 잘 만들어 주는 측정기관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해에는 기존의 측정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낮추어 주겠다는 또 다른 측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맺게 된다. 측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일거리가 있어야만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다른 측정기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즉 이전보다 측정 수수료를 낮추거나 적어도 올리지는 말아야 하고 사업주가 곤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측정 결과를 낮추어 평가해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에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역사가 오래된 측정기관에서는 측정을 담당하는 기존의 산업위생사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니 인건비 비중은 계속 올라가는데도 새로운 산업위생사가 일할 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된다.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수가처럼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수수료도 규정으로 정해주거나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

작은 규모의 측정기관은 인건비가 비싼 숙련된
산업위생사를 내보내고 싼 새로운 미숙련된
산업위생사를 채용하게 되어 부실 측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가의 분석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면 경영면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거나 측정기관으로서 존재의 기로에 서게 되므로 오래된 고가의 장비도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특수건강검진기관을 구분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니 환경 측정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평소에 어떤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이긴 하겠지만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수가처럼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수수료도 규정으로 정해주거나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 🙄